



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 개정(2004. 12. 17)

1. 개정배경

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검사 시 실시하는 제품검사주기를 강화하고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개정내용

□ 자체 검사주기조정

- 기본모델이 많은 업체의 경우 3개월 주기의 제품검사는 부담요소로 작용하여 기본모델 보유수에 따라 자체검사 주기를 조정함

기본모델수	10개이하	50개이하	50개초과
시험 주기	분기별 1회이상	반기별 1회 이상	년 1회이상

□ 정기검사시 제품시험의 주기 조정

- 불량전기용품유통방지를 위하여 정기검사 시 3년에 1회 실시하던 제품시험 주기를 매년 11개 분야별 대표적인 품목으로 조정함

□ 보유검사설비 개정

- 품목별 보유검사설비 중 제품검사에 불필요한 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설비는 추가함

□ 처분기준 개정

- 화재·감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34개 검사항목을 안전인증 취소에서 개선명령으로 조정함

※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.ats.go.kr 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(02-509-7235)로 문의하시기 바람